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익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1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익명처리 정의 신설 및 적용제외 조항 삭제	2
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	10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도입 및 기록보존의무 부과	14
4.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21
5. 부칙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익명처리 정의 신설 및 적용제외 조항 삭제

- 개정안은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익명처리를 “처리”의 정의에서 제외하며,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2호 및 제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3. ~ 8. (생략) <u>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u>	제2조(정의)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u> 2. ----- ----- ----- ----- ----- ----- <u>다만, “익명처리”는 제외한다.</u> 3. ~ 8. (현행과 같음) <u><삭제></u>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구분한 개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가명정보를 의미하고, “가명정보”란 가명처리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¹⁾되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3장제3절)가 적용됨.

○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법 제58조의2²⁾에 따라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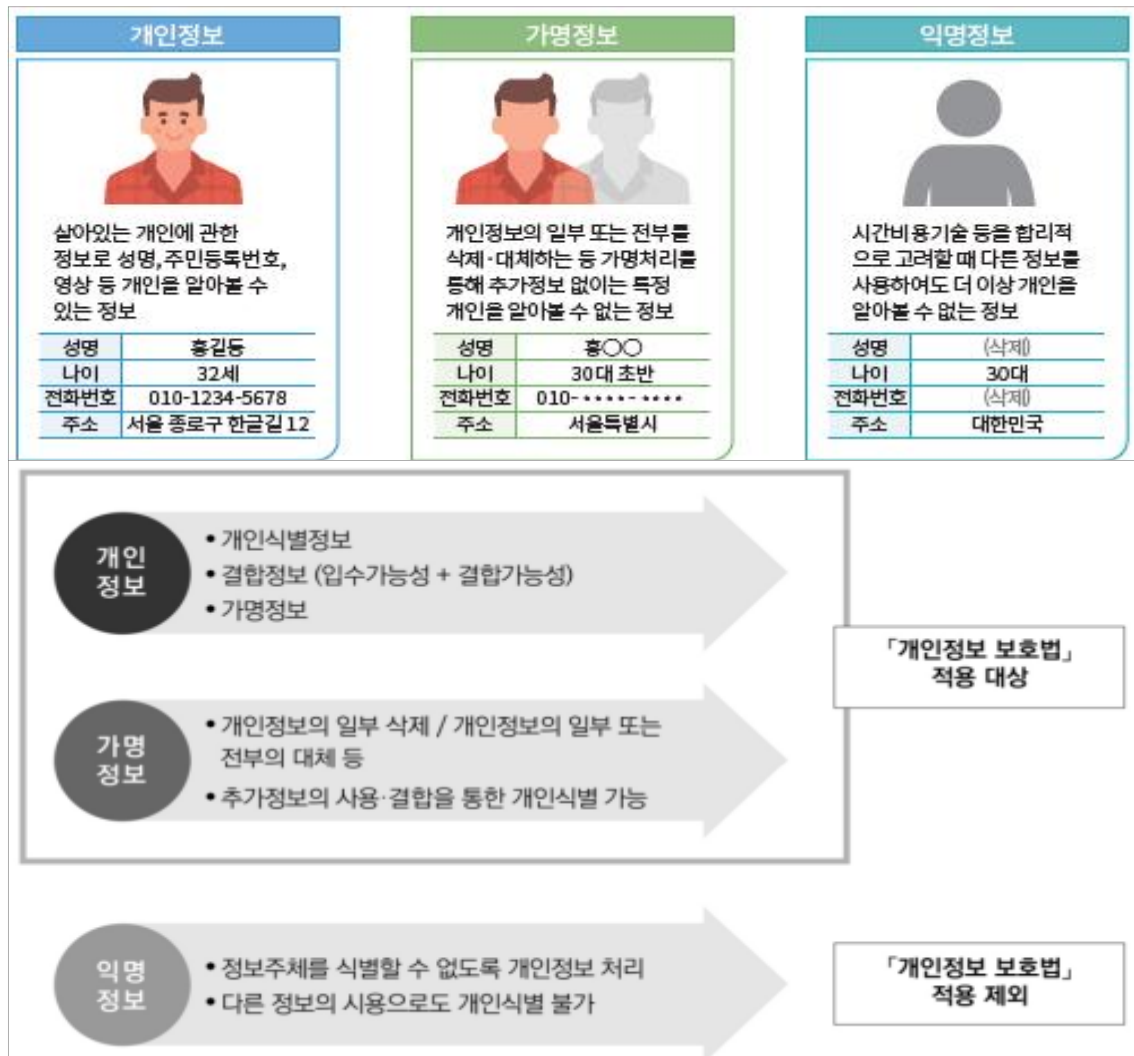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 아니함.

- 이는 익명정보로는 해당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의 비교>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4, p.9.,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p.3.)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가명처리를 권장하고 있음.³⁾

○ 이는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가명처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여도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하여 익명처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가명·익명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익명처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려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익명정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익명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에 부담이 발생하는 등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익명정보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컨대, 네이버는 개인용 파일저장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박스(MYBOX)에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사진의 비식별화 메타데이터(사진·동영상 파일 등의 데이터에 담긴 콘텐츠의 종류, 촬영일시, 촬영장소 등을 알려주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기 사진촬영장소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두고 메타데이터가 가명정보인지 혹은 익명정보인지, 해당 정보를 기업이 활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익명정보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법 제58조의2)을 삭제하고, 익명처리를 정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익명정보에 관한 규율 체계를 구축하여 익명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익명정보의 활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익명처리를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 안 제2조제1호의3은 기존 적용제외 조항(법 제58조의2)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특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4) 매일경제, “[팩트체크] 네이버가 클라우드에 저장한 내 사진을 들여다본다?”, 2022.12.28., 디지털데일리,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 흐름 속 ‘혼돈’”, 2022.12.29.,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은 익명처리를 정의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개인신용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정성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⁵⁾

- 그중 익명처리를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2조제1호의3과 「신용정보법」 비교>

법 §58의2	개정안 §2 1의3.	신용정보법 §2 17.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익명처리를 처리의 정의에서 제외한 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가명처리·익명처리는 해당 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익명처리에 대해서만 “처리”의

5) 개별적인 내용은 각 조항의 검토에서 비교하여 기술함.

○ 참고로, 현행법상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가명처리”는 법 제2조제2호의 “처리”의 개념에 포함하여 규율되고 있고, 「신용정보법」에서도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면서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음.

법 §2 2.	개정안 §2 2.	신용정보법 §2 1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 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 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를 말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다만, “익명처리” 는 제외한다.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생성, 연계, 연동, 기 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 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8 -

○ 보호위원회 또한 익명정보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익명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제외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ICT기업 등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EU,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익명처리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익명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익명처리를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익명처리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은 익명정보 판단의 기준과 방법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정보의 정의 및 익명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익명처리의 안전성 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장려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익명처리의 정의 및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

-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② ~ ⑤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 ----- ----- -----제28조의10제1항에----- ----- ----- <u>3의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⁶⁾에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⁷⁾ 및 제28조의8제1항⁸⁾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이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정보 생성을 위해 개인정

-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법 제 58조의2 해석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익명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익명정보의 활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로 발의되었으나, 제1항에는 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체계 및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익명처리를 위한 경우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9)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p.53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제58조의2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정보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익명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익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익명정보의 활용에 제약이 가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8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지 않고 안 제3장 제4절(익명처리에 관한 특례)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익명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보호위원회 또한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기보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익명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도입 및 기록보존의무 부과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에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개인정보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하여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해당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인정 업무를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그 날짜,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조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4항 및 제75조제4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4절 익명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8(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로 추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 12. (생략) ⑤ (생략)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 및 제2항의 인정 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9에 따른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익명처리한 날짜 2.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3.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나 익명처리 시의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익명정보처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다만, 보호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교육분야에서는 처리된 익명정보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익명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 기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정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익명처리 시 익명처리의 날짜, 익명정보의 항목,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익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와 제한사항 등을 포함한 익명정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¹⁰⁾

□ 이처럼 익명처리 관련 사항이 모두 익명정보처리자에게 맡겨짐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익명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익명정보처리자 역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에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필요 시 확인할 수 있

10) 보호위원회는 가명·익명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7. 2쪽.).

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익명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익명처리 전문기관”(안 제28조의9)에 적정성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명처리 전문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개정안과 「신용정보법」을 비교하면, 적정성 심사, 적정성 심사의 위탁, 기록보존의무 등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¹¹⁾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개정안 제28조의8과 「신용정보법」 비교>

개정안 §28의8	신용정보법 §40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요청 가능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개인신 용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요청 가능
보호위원회가 심사하여 적정성 인정 시 익명정보로 추정	금융위원회가 심사하여 적정성 인정 시 익명정보로 추정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적 정성 심사·인정 업무 위탁 가능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에 적정 성 심사·인정 업무 위탁 가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익명처리 시 3년간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 거 기록 보존 의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익명 처리 시 3년간 날짜, 정보의 항목, 사 유와 근거 기록 보존 의무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가 법제화되면 사
실상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될 우려가 있다는 한국인터넷기
업협회의 의견과, 익명처리 기록보존의무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한국
인터넷기업협회) 및 의무의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보호위
원회에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보호위원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적정성 심사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익명처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
여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나,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사실상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성 심사
요청이 사업자의 자율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도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에 대

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법 제40조의2 제3항), 해당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반드시 사실상의 의무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음으로, 익명처리 기록보존의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하여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보호위원회는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가 익명처리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될 것인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에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는 ① 익명처리 시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할 경우 익명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익명정보 활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②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가명정보에 적용되는 기록보존의무¹²⁾를 익명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한편으로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와 익명처리한 경우 모두 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법 제 40조의2제8항)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록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비용의 과다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익명처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처리 전문기관이 익명처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9(익명처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8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익명처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2.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익명처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더라도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익명처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업체에서 익명처리 솔루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익명처리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익명처리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성 심사 위탁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익명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동시에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익명처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익명처리 전문기관이 익명처리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법」은 개정안과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적정성평가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체계¹³⁾ 마련 의무 등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율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⁴⁾ 익명처리 전문기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것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28조의9와 「신용정보법」 비교>

개정안 §28의9	신용정보법 §26의4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가능	금융위원회가 정보집합물 ¹⁵⁾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가능
익명처리 전문기관의 업무: ①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익명처리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 보유 정보집합물의 결합·전달
②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③ ①·②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③ ①·②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의 ①·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아래 경우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①·②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①~③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위의 ①·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아래 경우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①·②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①~③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아울러 익명처리 전문기관이 익명처리한 정보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익명처리 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재식별 위험 방지를

15)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제15호나목).

위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된 정보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를 각각 분리하고,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호위원회는 익명처리 전문기관이 익명처리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익명처리 절차가 관대하게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처리 전문기관의 업무에서 익명처리를 제외하거나 익명처리 컨설팅·솔루션 제공 등 익명처리 지원 업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5. 부칙

□ 개정안의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업무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기준, 익명처리 전문기관 내 적정성평가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험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의 마련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익명처리 조치기록 보존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¹⁶⁾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

16)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은 국민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